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 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지내도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122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단지내도로(공동주택)의 교통안전실태점검 요청 시 필요한 입주민 동의 비율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단지내도로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673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대학 구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주체를 정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98호, 2023. 11. 14. 공포, 2024. 1. 1. 시행)으로 항공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 통합됨에 따라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면제 대상 자격증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면제 과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시 필요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구체화(안 제13조제4항 내지 제6항)
- 나. 단지내도로에 대학내도로도 포함됨에 따라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
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을 추가(안 제2조의2
및 제47조의2제1항3호)
- 다. 공동주택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실태점검
요청 시 필요한 입주민 동의 비율(전체 입주민의 100분의 20) 명시(안
제47조의2제4항)
- 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 명칭 변
경사항 반영 및 국가자격 시험과 중복되는 필수시험 면제 과목 명확
화(안 별표 7 개정)
- 마.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신설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교통안전법」 개정·공포('24. 1. 23.)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수정,
법령 근거조항 오기 수정(안 제39조제2호, 제47조의2제3항, 제48조의2
제3항, 별표 3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국무조정실 사전 심사 요청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단지에”를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으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등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안에 관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주요 내용을 해당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등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전단에 따라 공고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도지사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등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 1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법 제57조의3제8항”을 “법 제57조의3제9항”으로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 ③ 법 제5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 전체 100분의 20의 서면 동의를 말한다.

제4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제29조제1항 관련)”을 “(제20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나목2) 중 “항공기체정비기능사·항공기관정비기능사·항공장비정비기능사 또는 항공전자정비기능사”를 “항공기정비기능사 또는 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국가자격”을 “제1호 나목의 국가자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국가자격”을 “제2호 나목의 국가자격”으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호나목의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항공기체”는 항공교통안전관리

자의 시험과목인 “항공기체”와 같은 과목으로 본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제20조제3항 관련)

$$\text{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frac{(\text{교통사고 발생건수} \times 0.4) + (\text{교통사고 사상자 수} \times 0.6)}{\text{자동차등록(면허) 대수}} \times 10$$

비고

1. 교통사고는 직전연도 1년간의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나.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다. 경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2.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교통사고 사상자 수 산정 시 경상사고 1건 또는 경상자 1명은 '0.3', 중상사고 1건 또는 중상자 1명은 '0.7', 사망사고 1건 또는 사망자 1명은 '1' 을 각각 가중치로 적용하되,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산정 시, 하나의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장 가중치가 높은 사고를 적용한다.

3.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frac{\text{변동 전 } \left(\frac{\text{교통사고 발생건수} \times 0.4}{\text{변동 전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 + \frac{\text{교통사고 사상자 수} \times 0.6}{\text{변동 전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 \right) \times 10}{\text{변동 전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 + \frac{\text{변동 후 } \left(\frac{\text{교통사고 발생건수} \times 0.4}{\text{변동 후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 + \frac{\text{교통사고 사상자 수} \times 0.6}{\text{변동 후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 \right) \times 10}{\text{변동 후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
(제43조제1항 관련)

종류	면제대상자	면제되는 시험과목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교통법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교통법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차량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능사·철도토목기능사·철도운송기능사 또는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u>항공기정비기능사 또는 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u>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송용·사업용·자가용조종사(활공기는 제외한다), 항공사·항공기관사·항공교통관제사·운항관리사 또는 항공정비사(활공기는 제외한다)	
4. 항만교통 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또는 항로표지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선체건조기능사·동력기계정비기능사 또는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선박직원법」에 따른 4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 또는 2급 이상의 통신사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5. 석도교통 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자	선택과목

비고

1. 제1호 나목의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자동차차체정비”, “자동차정비 및 안전기준” 및 “건설기계 정비”는 도로교통안전관리자의 시험과목인 “자동차정비”와 같은 과목으로 본다.

2. 제2호 나목의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철도차량공학”은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시험과목인 “철도공학”과 같은 과목으로 본다.

3. 제3호 나목의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항공기체”는 항공교통안전관리자의 시험과목인 “항공기체”와 같은 과목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u>공동주택단지</u> 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 ----- ----- ----- ---- <u>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④ <u>시·도지사등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안에 관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주요 내용을 해당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등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u>

<신 설>

<신 설>

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관리하는 자)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생략)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3. ~ 7. (생략)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전단에 따라 공고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도지사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등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 1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관리하는 자) -----

-----.

1. (현행과 같음)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3. ~ 7.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

관리자 등)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서 “단지내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외한다.

1. 2.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③ 법 제57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를 말한다.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①·② (생략)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경찰청장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

관리자 등)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 전체 100분의 20의 서면동의를 말한다.

④ 법 제57조의3제9항-----

-----.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라 <u>도로교통공단</u>에 위탁한다. 1. ~ 4. (생 략) ④ (생 략)	-- <u>한국도로교통공단</u>-----.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68